

의안번호	제 759 호
의 결 연 월 일	2017년 월 일 (제 회)

##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

발 의 자	박한범 의원 등 6명
발의연월일	2017년 12월 5일

#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안

## (박한범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759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7년 12월 5일  
발 의 자 : 박한범, 최광옥, 연철흙  
박봉순, 이언구, 임병운

### 1. 제정이유

-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을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지원·육성하여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정의(장애인문화예술인, 장애인문화예술단체 등) (안 제2조)
-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·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및 시행계획 수립 (안 제3조~제4조)
-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사업 (안 제6조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문화예술진흥법
- 나. 관련부서 협의 :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예술산업과와 협의함
- 다. 입법예고 : 2017. 11.21 ~ 11. 26

##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문화예술진흥법」과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·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“장애인문화예술인”이란 충청북도(이하 “도”라 한다) 지역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.
- 2.“문화예술”이란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, 미술(응용미술을 포함한다), 음악, 무용, 연극, 영화, 연예(演藝), 국악, 사진, 건축, 어문(語文),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.
- 3.“장애인문화예술단체”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.

**제3조(도지사의 책무)**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시행계획 수립 등)** ①도지사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충청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 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 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·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
2.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·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
3.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
4.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도지사는 적절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**제5조(장애인문화예술단체)** 장애인문화예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

1. 도내에 소재한 단체
2. 최근 2년간 전시, 교육 등 문화예술 분야의 정기적인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
3. 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

**제6조(지원사업)**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·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
2. 장애인 문화예술교육
3.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국내·외 교류
4. 역량 있는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
5.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

**제7조(장애인 미술작품 구입)** 도지사는 장애인 미술작품을 구입

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다만, 구입 대상작품은 도내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장애인의 창작품이어야 한다.

**제8조(사무의 위탁)** ①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와 범위,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문화예술진흥법

제15조의2(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·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사업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